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93 발의연월일: 2025. 1. 9.

발 의 자:이용우·김문수·조계원

김한규 · 김태선 · 김우영

김남근 • 민병덕 • 이원택

백승아 • 정준호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면 제도를 운영하여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사면권은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원리,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특정 집단을 위하여 행사되는 등,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국민 법 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편제2장(외환의 죄) 및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는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헌문란 등 중대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

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함(안 제3조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편제2장 외환의 죄, 「군 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선 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제3조(사면 등의 대상)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단서 신설></u>	<u>다만, 「형법」 제2편제1</u>
	장 내란의 죄, 제2편제2장 외환
	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
	고받거나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ㆍ정지
	된 자는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